이 보도자료는 2020. 9. 15.(화)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경찰 POLICE	보 도 자 료 2020. 9. 15.(화)
서울동부지방검찰청	서울성동경찰서	형사제5부(02-2204-4316) 주책임자: 부장검사 하동우 성동서형사과(02-2286-0380) 주책임자: 형사과장(경정) 한동훈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강형민 (전화 02-2204-4201)		

제 목	26억 원 편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결과 -환전상 등 조직원 5명 구속 기소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**서울동부지검 금융·조세범죄전담부**(부장검사 하동우)와 **서울성동경찰서**(형사과장 한동훈)는 1명의 피해자 상대로 **약 26억 원**을 편취한 **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검거**하여 **구속하고,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모두 밝혀 전원 구속 기소**하였음

-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**1인 피해자 상대로는 가장 큰 규모**에 속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를 위해 **성동경찰서는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**하여 **약 2주간의 잠복수사 및 CCTV 분석 등 과학수사 방법**을 동원하여 **신속히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**하고,

- **서울동부지검**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**통신영장, 체포영장,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과정에서 사경과 긴밀히 협의**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,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**관련 진술과 증거를 광범위하게 확보**하고, **사경의 협조를 얻어 조직원들의 혐의를 적극 입증하였음**

-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**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확보한 후 동결조치**하였고, 최근 개정된 『**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**』에 따라 조직원들의 **범죄수익 전부**를 **추징**할 예정으로, **범죄수익 환수**에도 만전을 기하였음

-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성동경찰서는 향후에도 **긴밀한 협력**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적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**'금융사기 예방진단표'에 '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는지 여부'를 포함**하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임

1 피고인들 인적사항

- 피고인 A○○(46세), 현금수거책
- 피고인 B○○(32세), 현금수거책
- 피고인 C○○(33세), 현금전달책
- 피고인 D○○(42세), 현금전달책
- 피고인 E○○(57세), 환전상(환전책)

2 공소사실 요지

- 2020. 7.~8. A○○~D○○는 공모하여, **검찰청 직원을 사칭**하면서 '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'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원 편취 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사기]**
- 2020. 8. E○○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6억 5,000만원을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 **[사기방조, 외국환거래법위반]**

3 수사 경과

- '20. 8. 서울성동경찰서, 사건 구속 송치(분리송치)
- '20. 8.~9. 서울동부지검, 피의자 조사 등 보강수사 진행

※ 혐의 부인하는 피고인의 혐의 입증 위해 **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DB 요청**하여 범행가담 정황 확인하는 등 **협력 수사 진행**

- '20. 8. 20.~9. 15. 피고인들 **5명 구속 기소**

4 수사 의의

- 1인 상대로 26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해 **잠복 수사** 및 **CCTV 분석** 등 **과학적 수사기법**으로 관련자 대부분 검거
- **CCTV 분석, 경찰 범죄 정보 DB** 등을 통하여 피해금을 해외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**환전상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율**하여 **구속 기소**

※ 피고인 E○○(환전상) 관련하여 '위챗' 대화내역 등이 삭제되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DB 자료 등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피고인이 **본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온 정황을 확인**하였음

-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**범죄수익 약 3,600만 원**이 들어 있던 계좌를 발견, **은행의 협조를 받아 동결조치**하였고, 개정된 **부패재산몰수특례법**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**추징 구형**할 예정임

5 향후 계획

- **검찰과 경찰은** 지속적으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 상호협력 체제하에 **대검찰청의 엄단 지침**에 따라 **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**를 진행할 예정임

- 또한, 소위 **'환치기'** 방법으로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**환전상** 등에 대하여도 **적극적인 수사**를 통해 **보이스피싱 가담 사실**을 밝히도록 하겠음

-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『**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**』 등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**피해자의 피해회복**에 만전을 기하겠음

- 아울러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'**금융사기 예방진단표**'에 '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**직접 설명**하였는지 여부'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**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건의**할 예정임

※ 본건 **피해자(49세)**는 4일간 합계 26억 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'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'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**'아니오'**라고 체크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**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**고 하는 바(당시 **금융기관 직원**은 피해자가 젊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함),

- 금융기관 직원이 **보이스피싱 사례,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을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**하도록 하고,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▨